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종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131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8년 자영한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 연장(이종욱의원안)	2

I. 개요

1. 이종욱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7131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종욱의원 등 14인
- (2) 제 안 일 : 2024. 12. 31.
- (3) 회 부 일 : 2025. 1. 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어업인의 경영을 지원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최근 어업분야는 고령화와 신규인력 부족으로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어업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해외 수산물의 수입 등으로 인하여 어업에 종사하려는 영농후계자가 점차 줄어드는 등 수산업 환경이 점차 나빠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한 조세특례제도는 안정적·장기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산업의 경제적 지원과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조세특례의 적용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3제1항).

II. 검토의견

1. 8년 자영한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 연장(이종욱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69조의3) ○ 대상 - 어업용 토지등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주거지역으로 편입되거나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일정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	☐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연장: 2027년 12월 31일

* 이종욱의원안 2024. 12. 31. 발의(의안번호 7131)

☐ 개정안은 2025년 말에 일몰이 도래하는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 말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3¹⁾에서는 어업용 토지등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양식업 등 직접 어업에 사용²⁾한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어업용 토지등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어업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② 법 제69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³⁾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해당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함.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동 조세특례의 감면실적은 2023년 약 25억원이고, 2024년은 약 20억원, 2025년은 약 22억원으로 전망하고 있음.

[정부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상 감면실적 및 전망]

(단위: 억 원)

구 분	2023년 (실적)	2024년 (전망)	2025년 (전망)
어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25	20	22

* 자료: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어업에 사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 어업용 토지등에서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육상수조식내수양식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이하 이 조에서 “양식등”이라 한다)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 어업용 토지등에서 양식등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③ 법 제69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이란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양식등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어업용 토지등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 있는 어업용 토지등으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어업용 토지등.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어업용 토지등으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어업용 토지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어업용 토지등으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어업용 토지등.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 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 참고로, 2023년 양식어업가구는 1만 938호로 2019년 대비 71.5%, 2023년 양식어가인구는 2만 4,337명으로 2019년 대비 69.3%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5년간 어업가구 및 어가인구 현황]

항목		2019	2020	2021	2022	2023
어업가구 (호)		50,909	43,149	43,327	42,536	41,775
어가인구 (명)		113,898	97,062	93,798	90,805	87,115
	양식어업가구(호)	15,292	10,335	11,228	11,174	10,938
	양식어가인구(명)	35,136	25,205	26,456	25,829	24,337

* 자료: 통계청(농림어업조사 중 「어업형태별 어가, 어가인구」)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점이 있음.

첫째, 동 조세특례는 육상 양식어업인이 직접 자영한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젊은 어업인의 유입을 유도하여 양식산업의 인력난 해소, 어촌의 고령화 방지 및 고부가가치 품종 육성을 도모하려는 긍정적인 목적이 있음.

향후 양식어업 종사자 수의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되므로 수산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양식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가 필요할 여지가 있음.

둘째, 동 조세특례와는 달리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⁴⁾ 및 자경산지

4)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양도세 감면⁵⁾의 경우에는 별도의 일몰기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다른 조세특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지난 2022년 정기회에서는 동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 말에서 2025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한 바 있음.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48

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4(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영한 산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산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산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을 감면한다.